

수신처
(경유)

제목 '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' 개정본 배포

1. 관련

- 가. '국가연구개발혁신법' 제31조 제4항
- 나. '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' 제58조 제1항

2. 위 호 관련, 연구개발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자체연구윤리 규정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필요와 국내외 사례, 연구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한 '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'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, 관련 업무 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본 1부.
2. 연구자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1부. 끝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

수신처 본부(각 과),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, 중앙행정기관, 대학교

주무관 최인호

사무관 옥영민

연구윤리
권익보호 유승후
과장

성과평가 전결 07/22
정책국 이상운
장

협조자

시행 연구윤리권익보호과-1334 (2024-07-23)

접수

우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, 정부세종청사 4동 3-6층 (어진동) / <http://www.msit.go.kr>

전화 044-202-6975 전송 044-202-6020 / cih1224@msit.go.kr / 공개 /

생각은 창의적으로, 행정은 적극적으로!